임실군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임실군의회의장

2022년 1월12일

임실군의회 규칙 제2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의 개정)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제1항제1호 중 "임실군"을 "의회 및 집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회운영"을 "지역사회 및 의회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중 "감사장(패)"을 "감사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단서 중 "감사장(패)"을 "감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임실군의회의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장 문)

년 월 일

임실군의회의장 ○○○

제2조(「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임실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 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제41조의2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1항"으로,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를 "지방의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다음 에"를 "다음에"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표결수 및 투표자

12. 기립, 거수 표결,이의유무의 찬반 의원 또는 기권 의원 성명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를 "공개"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의2제1항 중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에"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91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

서 중 "법 제83조제2항"을 "법 제9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동조 제3항"을 "제82조제3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조"를 "같은 조"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의원으로 하여금변명"을 "의원에게 변명"으로 한다.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88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3조(「임실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의 개정)

제명 "임실군 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임실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를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법 및 임실군의회회의규칙"을 "「지방자치법」 및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와 임실군의회회의규칙"을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4조(「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임실군 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실군 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임실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신 설>	제5조(표창장) ① ----------. 1. 의회 및 집행기관 ---------- 2. 지역사회 및 의회운영----------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	제6조(감사장) 감사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신 설>	---------- ---------- ----------.
제8조·제9조 (생 략)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⑦ (생 략)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 ---------- ----------. ---- 감사장 ---------- ----------.
제12조·제13조 (생 략)	제13조·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2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 ---------- -- 규정하여 ---------- ---------- ----------.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미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 ----------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 ----------.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4조(개회식) ----------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 끝나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 ----------

는 날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시작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 제72조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 ----------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해야 한다.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② (생 략)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② (생 략)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

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는 기립 또는 거수 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 지방의회 ----------.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제42조(투표절차) ① ---------- ---------- ----- 다음에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표결수 및 투표자
<신 설>	12. 기립, 거수 표결,이의유무의 찬반 의원 또는 기권 의원 성명
12. ~ 14. (생 략)	13. ~ 15. (현행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 공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신 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

	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5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제1항----------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 ---------- ----------. ---- 법 제99조제2항----------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 ---------- ---------- ---------- 제82조제3항---------- ---------- ---------- 해야 ---- -. <후단 삭제>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차기의회의 집회일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 ---------- 같은 조 - ---------- ---------- ---------- ----------. ------ ---------- ---------- ----------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생 략)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현행과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같음)
	② ---------- ---------- ---------- ---------- ---- 의원에게 변명--------- ----------.
<신 설>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제88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3 임실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

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 -------- 각 호----------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제9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해야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각 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임실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 ---------- ---------- 「지방자치법」 및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 ----.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와 임실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 ----------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 ----------.

4 임실군 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임실군 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65조에 따라 ---------- ---------- ---------- ----------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 각 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심문) ---------- ---------- ---------- ---------- ---------- 3일 전 ----------.
제6조(발언 및 변명) ①·② (생략)	제6조(발언 및 변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 ---------- ----.